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(관광체육국)

□ 건의사항: 총 2건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외국인환자 미용·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기간 연장	관광산업과
2	여행업 등록 시 사무실 요건 완화	관광산업과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(관광산업과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외국인환자 미용·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기간 연장 건의 (관광산업과, '25. 11. 1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 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6년 4월 도입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미용·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는 부가가치세의 10%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, 동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자로 종료 ※ 당초 이 특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6차례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기간 적용기한 종료 시, 환자 이탈로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력 약화 및 의료관광 산업 전반의 위축 우려 ※ '24년 외국인환자 : 약 117만명 (전년 대비 2배 증가) ※ '24년 외국인환자 신용카드 소비패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의료 지출액 : 1조 4,035억원 - 미용·성형 총지출액 : 9,449억원 (총 의료지출액의 67%) - 미용·성형 부가세 총환급액 : 955억원 (출처 : 보건산업진흥원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기간을 '2025년 12월 31일까지'에서 '2026년 12월 31일까지'로 개정 건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세특례제한법 	<p>보건복지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여행업 등록 시 사무실 요건 완화 (관광산업과, '25. 12. 17.)</p>	<p>□ 현 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은 여행업 등록 시 ‘사무실(소유권 또는 사용권 존재)’을 필수로 규정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대면·온라인 등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되어 별도의 전용 공간이 필수적이지 않음 - 여행업의 경우 1인 창업이 증가함에 고려할 때, 기존의 일률적인 사무실 요건이 현실과 미부합 -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무실 요건은 창업자들의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사업체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※ 코로나19 시기 여행업체의 최대 경영상 어려움은 ‘사업자 임대료·관리비 부담’(44.9%). (’21년 전국 여행업체 실태조사, 문체부한국여행업협회)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행업 등록요건 완화(사무실 범위 확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관광진흥법 시행령) 주거용 건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▶ 관광진흥법 시행령 [별표1] 사무실 표현을 ‘사업장’으로 변경하여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으로 확대 <p>□ 관련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광진흥법 시행령 [별표1] ○ 여행업 업무편람 	<p>문화체육관광부</p>

□ 조세특례제한법

현 행	개정안
<p>제 107조의3(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)</p> <p>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인관광객”이라 한다)이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(이하 이 조에서 “특례적용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공급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 (이하 이 조에서 “환급대상 의료용역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 107조의3(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□ 관광진흥법 시행령

현 행	개정안
[별표 1] 1. 여행업 가. 종합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: 5천만원 이상일 것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. 국내외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: 3천만원 이상일 것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. 국내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: 1천500만원 이상일 것, 다만,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.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	[별표 1] 1. 여행업 가. 종합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: 5천만원 이상일 것 (2) 사업장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. 국내외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: 3천만원 이상일 것 (2) 사업장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. 국내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: 1천500만원 이상일 것, 다만,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. (2) 사업장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

□ 여행업 업무 편람

현 행(14쪽~15쪽)	개정안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등록신청 시 필요(확인 서류)</div> 6. 자가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시 임대차계획서 ※ 건축물 용도 확인 : 근린생활시설 1·2종 사무소 및 업무시설 사무소 및 오피스텔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건축물의 용도</div>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등록신청 시 필요(확인 서류)</div> 6. 자가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시 임대차계획서 ※ 건축물 용도 확인 : 근린생활시설 1·2종 사무소 및 업무시설 사무소 및 오피스텔, 주거용 건물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건축물의 용도</div> (2) 사업장 - 사무실 경우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- 주거용 건물 경우 구축된 디지털 채널이 있을 것